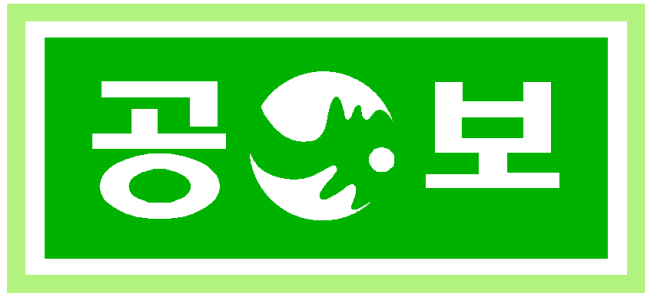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제 833 호 2013. 8. 7(수)

## 훈 령

○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94호[울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].....2

회 관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 
이에 발령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윤종오



2013년 8월 7일

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94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 
일부개정 규정**

울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표 1】

##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(제9조 관련)

공간정보 등급	분 류 기 준
비공개	○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 지역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
공 개 제 한	○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 ○2차원좌표(經·緯度)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○3차원좌표(經·緯·高度)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
항공사진	○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 (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) ○해상도 50cm급 초과 항공사진은 건물·토지 소유자, 법 제2조 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. ※ 단, 국정원장이 별도 동보한 지역의 해상도 25~50cm급 항공사진은 일반인 대상 제공 또는 판매시 기록유지를 생략 할 수 있다.
공 개	
비공개	○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 지역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○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
공 개 제 한	○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 초과자료 ○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
위성영상	○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○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일반지역 자료 (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) ※ 단, 해상도 50cm급 초과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
공 개	
비공개	○추적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포함된 지도
수치지도	○군사지도 ○전력·통신·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○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○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진 력: 발전소, 변전소, 지상송전선, 송전탑 - 상수도: 저수탑, 취수탑, 급수탑, 수문, 댐, 지상상수관, 지상용수관, 양배수장경계, 양배수장 기호 - 가스관: 지상가스관 - 송유관: 지상송유관, 저장소 - 그 밖의 관: 그 밖의 수송관 맨 홀: 공동구맨홀, 송유맨홀, 가스맨홀, 전기맨홀, 통신맨홀, 전화 맨홀, 그 밖의 맨홀(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) 특정건물: 교도소, 구치소,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공관리소
공 개 제 한	

공간정보 등급	분 류 기 준
수치지도 공개	○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(인터넷·내비게이션·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) ※ 단, 1:1,000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시에는 인적사항 기록유지
비공개	○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○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
그 밖에 공개 공간정보 제한	○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○격자간격이 90m보다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중 3차원좌표가 포함된 자료
공개	○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○3차원좌표가 포함된 격자간격 90m이상 입체 영상자료 ※도양·지질도, 도시계획도, 도로건설계획도, 지번도, 전자해도 등 ○비공개, 공개제한이 아닌 공간정보

※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